

## '24. 4월 생성(3월 이용분) 연장보육료 신청 관련 Q&A

**중요** ※ 연장보육료 반려는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반려가 선행되어야 가능  
연장전담교사 인건비 신청은 연장보육료 신청이 선행되어야 가능

**질의** 하원시간에 따른 보육료 지원금 산정은 어떤 계산방식으로 되나요?

예시 ... 하원시간에 따른 보육료 지원금 산정(영아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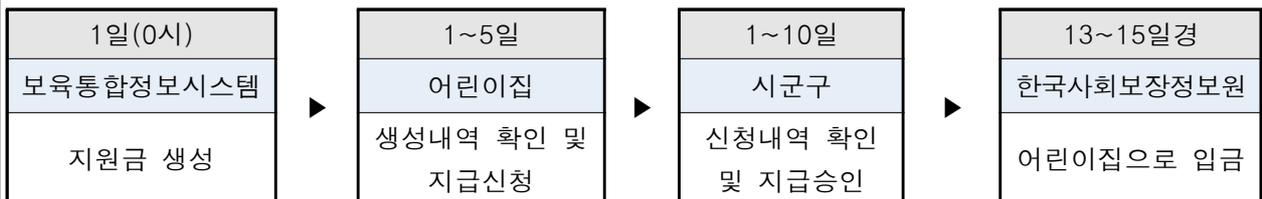
하원시간	보육료	하원시간	보육료
17:00~17:29	1,000원	18:30~18:59	4,000원
17:30~17:59	2,000원	19:00~19:30	5,000원
18:00~18:29	3,000원		

(사례) 월 18일 연장보육 이용(영아반)

17시 25분 하원(4일), 17시 45분 하원(5일), 18시 20분 하원(4일), 18시 30분 하원(4일), 19시 하원(1일)  
(연장보육료) 1,000원×4일 + 2,000원×5일 + 3,000원×4일 + 4,000원×4일 + 5,000원×1일 = 47,000원/월

\* 19:29 혹은 19:30분 하원시에도 동일하게 5,000원으로 산정

**질의** 연장보육료 신청, 승인 및 지급일정은 매월 어떻게 정해지나요?



**질의** 연장보육료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
- ▶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
- 연장보육료 지원 요건(아래 사항 모두 충족)
  - ① 아동의 등·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(전자출결시스템) 설치·운영
  - ②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

**질의** 연장보육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
- ▶ [국민행복카드] ⇨ [연장보육료 관리] ⇨ [신청] ⇨ 생성내역 확인 ⇨ [연장보육료 신청]

## 2024년 4월 생생(3월 이용분) 연장보육료 안내

■ 연장보육료: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중 연장보육료 지원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지급

○ 연장반 반배정 시(반구분으로 지원)

- 0세 연장반(0~2세) : 어린이집별 1개반만 구성가능(1:3)
- 2~3세/2~5세 혼합연장반 : 2-3세 혼합반 허용시(시군구) 어린이집에서 반생성 가능 (정부지원시설 불가)

○ 연장반 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시에도 지원 (연장반 간헐적 보육, 탄력보육 시에는 연장반 미배정)

-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

※ 기본보육 후,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지원

### 연장보육료 신청 및 지급절차 안내

#### ① 이용 시간 확인(어린이집)

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전자출석부에 등록된 아동의 연장보육 이용 시간을 매월 말일까지 확인

- \* 전자출석부의 하원시간과, 실제 이용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일 제외 3일 이내(공휴일 제외) 수정 가능. 단, 이용현황 확정 이후에는 확정일 이전에 대한 출석부 수정 불가(확정해제 후 수정)

#### ② 지원금 생성(보육통합정보시스템)

(생성기준)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1일0시(말일 24시)까지 확인된 전자출석부 출결정보를 기준으로 연장보육료 대상 아동 자동 생성

#### ③ 지원금 신청(어린이집 → 시군구)

(신청) 어린이집은 4월 5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연장보육료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

- \* (소급신청)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미신청 등으로 신청 당월에 연장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,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

#### ④ 지원금 승인 또는 반려(시군구)

(승인 또는 반려) 시군구는 4월 15일까지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어린이집의 연장보육료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승인 또는 반려

\* 당월 승인기간 내 미승인 시, 익월 승인기간에 승인 가능하며, 당월 추가 승인 불가

\* (재신청) 반려된 신청건에 대해 당월 승인 기간 내 재신청 가능하며, 이 기간 중 승인 시 당월 지급 가능

#### ⑤ 연장보육료 지급(정보원)

(지급)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 승인 후 3~5일 이내에 어린이집 계좌로 연장보육료를 지급

### [어린이집] '24. 4월 생성(3월 이용분) 연장보육료 신청방법

#### 1. 신청기간 : '24. 4. 1. (07:00) ~ 4. 5. (24:00)

○ 시군구 반려 건은 시군구 승인마감일까지 수정 후 재신청 가능

#### 2. 신청방법

[국민행복카드] ⇨ [연장보육료관리] ⇨ 생성내역 확인 ⇨ [신청내역 선택] ⇨ [신청]

① 기준연월 확인 후 [검색] 클릭 ② 미신청건 선택 ③ 하단 연장보육료 상세에서 아동별 이용시간 및 지원금액 확인 ④ [신청] 클릭

※ (연장보육료 재생성) 버튼을 누르는 시점에 어린이집 현황에 따라 연장보육료 재생성

## 2-1. 익월신청등록: 보육료 지원자격 및 이용시간 등 변경으로, 당월 제외 후 익월 신청 가능

기준년월 2021 07 검색

연장보육료재생성 4 신청 액셀파일 저장

No	선택	작업년월	신청상태	반수	아동수	정부지원금	부모부담금	계	신청일자	승인일자	반려일자	반려사유
1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2021.07	미신청	0	47	596,500	0	596,500				

3 익월신청등록 익월신청취소 액셀파일 저장

연장보육료 상세

입소일	퇴소일	보육료지원자격	익월신청여부	지급제외여부	사유	수납금액	부모부담	부모부담금	대상년월
2019.03.02		연장보육(만0~2세)	N	N		12,000	0시간	0	2021.06
2018.03.05		누리(만3~5세)	N	N		3,000	0시간	0	2021.06
2018.03.01		누리(만3~5세)	N	N		5,500	0시간	0	2021.06

**1** 미신청건을 선택 후(미신청 상태에서만 수정 가능) **2** 익월신청등록 아동 선택  
**3** 우측 사유 입력 후 **4** [익월신청등록] 클릭 **5** [신청] 클릭  
 ※ 익월신청등록 시, 신청금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제외 처리됨  
 ※ (익월신청등록 취소) 익월신청등록한 아동을 선택 후 **4** [익월신청취소] 클릭 시, 입력한 사유가 삭제되며 해당 아동의 연장보육료가 다시 당월 신청대상으로 포함하여 **5** 신청 가능

### '24. 4월 생생(3월 이용분) 연장보육료 지급 안내

-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연장보육료는 시군구에서 승인 완료한 내역에 한하여 '24. 4. 17. 입금 처리될 예정입니다. 단, 승인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예탁금이 부족한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.
- 매년 1월은 시군구 예탁 일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설치운영관리에 입력되어 있는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(일반계좌)** [어린이집운영] ⇨ [설치운영관리] ⇨ [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력] ⇨ [계좌확인] ⇨ [계좌변경요청] ⇨ [저장]

**(보조금계좌)** [어린이집운영] ⇨ [설치운영관리] ⇨ [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력] ⇨ [계좌확인] ⇨ [저장]

- 시군구 승인마감일부터 지급일 사이에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경우,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되거나 계좌불일치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※ 어린이집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[예금주명] 확인 필수